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비 고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 (생 략) 6. “인도장”이란 <u>시내면세점</u> 및 전자상거래에 의하여 판매한 물품을 구매자에게 인도하기 위한 곳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가. 출국장 보세구역내 설치한 장소 나. ~ 마. (생 략) <u><신 설></u> 7. ~ 15. (생 략)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 (현행과 같음) 6. “인도장”이란 <u>시내면세점, 출국장 면세점</u> 및 전자상거래에 의하여 판매한 물품을 구매자에게 인도하기 위한 곳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가. 출국장 보세구역내 설치한 장소 나. ~ 마.(현행과 같음) 바. <u>입국장 보세구역내 설치한 장소</u> 7. ~ 15. (현행과 같음)	○ 관세법 제196조 개정(입국장 인도장 도입)에 따른 인도장 정의 추가
제3조(운영인의 의무) ① ~ ④ (생 략) ⑤ 운영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팝플렛, 인터넷홈페이지와 게시판 등을 통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제3조(운영인의 의무)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운영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팝플렛, 인터넷홈페이지와 게시판 등을 통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	비고
1. 출국내국인의 <u>구매한도액</u>, 입국장 <u>면세점의 구매한도액</u> 및 면세한도액의 혼동방지 2. 면세점에서 구입한 면세물품의 원칙적인 국내반입 <u>제한</u>(입국장면세점은 제외한다) ⑥ ~ ⑦ (생략) ⑧ 운영인은 해당 월의 보세판매장의 업무사항(별지 제3호 및 <u>제3-1호에서 제3-5호 서식</u>)을 다음 달 7일까지 보세판매장 반출입물품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이하 “재고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⑨ 운영인은 보세판매장에 근무하는 소속직원과 타 법인 등에 소속되어 판매물품의 판촉·물류·사무 등을 위하여 근무하는 직원(이하 “판촉사원 등”	1. 출국내국인의 <u>구매한도액</u>, 입국장 <u>인도장에서 인도받을 물품의 구매한도액</u>, 입국장 면세점의 <u>구매한도액</u> 및 면세한도액의 혼동방지 2. 면세점에서 구입한 면세물품의 원칙적인 국내반입 <u>제한</u>(입국장면세점 판매물품 및 입국장 인도장 인도 물품은 제외한다) ⑥ ~ ⑦ (현행과 같음) ⑧ 운영인은 해당 월의 보세판매장의 업무사항(별지 제3호 및 <u>제3호의2에서 제3호의6서식</u>)을 다음 달 7일까지 보세판매장 반출입물품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이하 “재고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⑨ 운영인은 보세판매장에 근무하는 소속직원과 <u>다른</u> 법인 등에 소속되어 판매물품의 판촉·물류·사무 등을 위하여 근무하는 직원(이하 “판촉사원 등”	○ 관세법 제196조 개정(입국장 인도장 도입) 사항 반영 ○ 관세법 제196조 개정(입국장 인도장 도입) 사항 반영 ○ 서식 가지호 수정 ○ 문구수정

현행	개정안	비고
이라 한다)의 월별 현황(별지 제3-6호 서식)을 다음 달 7일까지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측사원 등은 운영인의 사용인으로 본다. ⑩ (생략) ⑪ 운영인은 「관세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1조에 따른 수용능력증감 등의 공사를 하려는 때에는 신청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라 한다)의 월별 현황(별지 제3호의 7서식)을 다음 달 7일까지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측사원 등은 운영인의 사용인으로 본다. ⑩ (현행과 같음) ⑪ 운영인은 「관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1조에 따른 수용능력증감 등의 공사를 하려는 때에는 신청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서식 가지호 수정 ○ 시행령 약어 수정
제4조(판매 대상물품) ① 운영인이 보세 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은 「관세법 시행규칙」 제69조의5와 같다.	제4조(판매 대상물품) ① 운영인이 보세 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은 「관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9조의5와 같다.	○ 시행규칙 약어 표시
② (생략)		
제5조(구매자 및 구매총액) ① ~ ③ (생략) ④ 운영인은 출국하는 내국인에게 「관세법 시행규칙」 제69조의3에서	제5조(구매자 및 구매총액)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운영인은 출국하는 내국인에게 규칙 제69조의3에 따라 미화 5,000달러	○ 시행규칙 약어 표시 및 문구수정 ○ 관세법 시행규칙 제69조의3 개정사항

현행	개정안	비고
<u>정하는 바와 같이 미화 3,000달러 이하의 구매한도 범위 내에서 물품을 판매하여야 한다.</u> ⑤ 운영인은 입국인에게 「관세법 시행규칙」 제69조의4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미화 600달러 이하의 구매한도 범위 내에서 물품을 판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술·향수는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 제3항에 따른 별도 면세범위 내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 ⑥ ~ ⑦ (생략)	이하의 구매한도 범위 내에서 물품을 판매하여야 하며, 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69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라야 한다. ⑤ 운영인은 입국인에게 규칙 제69조의4제1항에 따라 미화 600달러 이하의 구매한도 범위 내에서 물품을 판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술·담배·향수는 규칙 제48조제3항에 따른 별도 면세범위 내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 ⑥ ~ ⑦ (현행과 같음)	반영 ○ 관세법 제196조 개정(입국장 인도장 도입) 사항 반영 ○ 관세법 시행규칙 제69조의4 개정에 따른 조문 정리 ○ 제69조의5 개정사항(입국장 면세점 담배 판매 허용) 반영 ○ 시행규칙 약어 표시
제7조(내국물품의 반출입절차) ① ~ ③ (생략) ④ 운영인은 제4항에 따라 승인받은 물품을 반출하는 때에는 재고관리시스템에 반출내역을 신고하여야 하며, 환급대상이 아닌 내국물품을 제6조제1항의 장소에 보관하는 때에는 다른 외국	제7조(내국물품의 반출입절차)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운영인은 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물품을 반출하는 때에는 재고관리시스템에 반출내역을 신고하여야 하며, 환급대상이 아닌 내국물품을 제6조제1항의 장소에 보관하는 때에는 다른 외국	○ 오류정정

현행	개정안	비고
물품 등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판매물품의 보세운송) ① 시내면세점에서 판매한 물품(제11조에 따른 전자상거래방법에 의한 판매물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현품을 판매장에서 인도하지 아니하고 구매자가 서명한 교환권(별지 제10호서식, 전자서명에 의한 전자식 교환권을 포함한다)을 발행·교부하고, 인도장으로 운송한 후 해당 인도장에서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u>제11조에 따른 전자상거래방법으로 판매한 경우에는</u> 교환권번호를 통보한 후 인도하는 때 여권 등으로 구매자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④ 운영인은 교환권에 의하여 판매한 물품에 대하여는 반송 및 간이보세운송신고서(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관할지세관장에게 신고 후 수리를 받아	물품 등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판매물품의 보세운송) ① 시내면세점에서 판매한 물품(제11조에 따른 전자상거래방법에 의한 판매물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현품을 판매장에서 인도하지 아니하고 구매자가 서명한 교환권(별지 제10호서식, 전자서명에 의한 전자식 교환권을 포함한다)을 발행·교부하고, 인도장으로 운송한 후 해당 인도장에서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u>전자서명에 의한 전자식 교환권을 발행한 경우에는</u> 교환권번호를 통보한 후 인도하는 때 여권 등으로 구매자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운영인은 교환권에 의하여 판매한 물품에 대하여는 반송 및 간이보세운송신고서(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관할지세관장에게 신고 후 수리를 받아	○ 온라인면세점에서 발행하는 전자서명에 의한 전자식 교환권을 오프라인매장으로 확대 운영을 허용하여 업무 효율화 지원

현행	개정안	비고
보세운송 신고 건별로 행낭 또는 각종 운반 박스 등에 넣은 후 운영인 책임하에 시건 또는 봉인을 한 후 인도장으로 보세운송하되, 탑승 항공기 또는 선박 <u>출발예정</u> 2시간 전(인도장 관할 세관장이 보세판매장과 인도장의 거리, 교통상태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1시간 전으로 한다)에 도착되도록 한다. 다만, 각종 운반 박스 등으로 포장되어 시건이 어려운 경우, 봉인만 한 후 운송할 수 있다. ⑤ (생략) ⑥ 출국장면세점 운영인은 제11조에 따른 <u>전자상거래방법에 의하여 판매한 물품을</u>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인도장에서 인도할 수 있다.	보세운송 신고 건별로 행낭 또는 각종 운반 박스 등에 넣은 후 운영인 책임하에 시건 또는 봉인을 한 후 인도장으로 보세운송하되, 탑승 항공기 또는 선박 <u>출발(입국장 인도장의 경우 도착을 말한다)예정</u> 2시간 전(인도장 관할 세관장이 보세판매장과 인도장의 거리, 교통상태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1시간 전으로 한다)에 도착되도록 한다. 다만, 각종 운반 박스 등으로 포장되어 시건이 어려운 경우, 봉인만 한 후 운송할 수 있다. ⑤ (현행과 같음) ⑥ 출국장면세점 운영인은 제11조에 따른 <u>전자상거래방법으로 판매한 물품 및 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판매한 물품을</u>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인도장에서 인도할 수 있다.	○ 관세법 제196조 개정(입국장 인도장 도입) 사항 반영 ○ 문구수정 ○ 관세법 제196조 개정(입국장 인도장 도입) 사항 반영
제13조(인도자 지정 등) ① (생략)	제13조(인도자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비고
1. (생략) 2.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인도자로 <u>지정될 수 없다.</u> 가. 법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자 나. 관세 및 국세의 체납이 있는 자 ② ~ ③ (생략)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인도자로 <u>지정될 수 없다. 다만, 입국장 인도장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영 제213조의2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u> 가. 법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자 나. 관세 및 국세의 체납이 있는 자 ② ~ ③ (현행과 같음)	○ 관세법 제196조 개정(입국장 인도장 도입) 사항 반영
제14조(판매물품의 인도) ① (생략) ② <u>인도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인도업무를 보조할 직원(이하 "인도보조자"라 한다)을 둘 수 있다.</u> ③ ~ ⑥ (생략) ⑦ 인도자는 다음 <u>각 호의</u> 정하는 바에 따라 구매자에게 물품을 인도한다.	제14조(판매물품의 인도) ① (현행과 같음) ② <u>인도자는 인도업무를 보조할 직원(이하 "인도보조자"라 한다)을 둘 수 있다.</u>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 인도자는 다음 <u>각 호에서</u> 정하는 바에 따라 구매자에게 물품을 인도한다.	○ 인도장 업무 효율화를 위해 인도보조자에 대한 세관장 승인 절차 삭제 ○ 문구수정

현행	개정안	비고
1. 구매자로부터 교환권을 회수하여야 하며, 구매자의 직접서명(전자서명 포함)을 받고 구매시의 서명이나 인적사항을 대조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미화 3,000달러를 초과하여 구매한 출국내국인의 경우에는 미화 3,0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물품을 인도하고 인도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 구매대금의 환불이 가능하도록 해당 운영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인도자는 인도보조자에게 인도 업무를 위임할 수 있으나 교환권별 구매금액이 여행자휴대품면세범위 이상인 때에는 인도자가 교환권 여백에 인도확인 서명을 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인도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도자의 인도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1. 구매자로부터 교환권을 회수(전자서명에 의한 전자식 교환권의 경우 확인으로 대체한다)하여야 하며, 구매자의 직접서명(전자서명을 포함한다)을 받고 구매시의 서명이나 인적사항을 대조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미화 5,000달러를 초과하여 구매한 출국내국인에게는 미화 5,0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물품을 인도하고, 인도하지 않은 물품은 구매대금의 환불이 가능하도록 해당 운영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인도자는 인도보조자에게 인도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은 인도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도자의 인도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 물품 인도 시 교환권 회수가 불가능한 전자식 교환권의 경우 확인으로 대체 ○ 문구수정 ○ 관세법 시행규칙 제69조의3 개정사항 반영 ○ 인도업무 절차를 간소화하여 업무처리 효율성 제고

현행	개정안	비고
3. ~ 6. (생략) ⑧ (생략) ⑨ 인도자는 제7항제1호에 따라 회수된 교환권을 정리하여 세관장에게 보고한 후 <u>매</u> 10일 또는 세관장이 지정한 일자 단위로 판매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⑩ 운영인 및 인도자는 판매한 물품이 미인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운영인은 판매물품을 구매자의 <u>출국일시</u>에 인도될 수 있도록 인도장으로 신속히 운송하여야 한다. 4. ~ 6. (생략) ⑪ (생략) 1. (생략)	3. ~ 6. (현행과 같음) ⑧ (현행과 같음) ⑨ 인도자는 제7항제1호에 따라 회수된 교환권을 정리하여 세관장에게 보고한 후 <u>매월</u> 10일 또는 세관장이 지정한 일자 단위로 판매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u>다만, 전자서명에 의한 전자식 교환권은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송부 할 수 있다.</u> ⑩ 운영인 및 인도자는 판매한 물품이 미인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 2. (현행과 같음) 3. 운영인은 판매물품을 구매자의 <u>출입국일시</u>에 인도될 수 있도록 인도장으로 신속히 운송하여야 한다. 4. ~ 6. (현행과 같음) ⑪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 문구수정 ○ 전자서명에 의한 전자식 교환권 송부 방법 규정 ○ 관세법 제196조 개정(입국장 인도장 도입) 사항 반영

현행	개정안	비 고
2. 국제우체국에 근무하는 세관공무원은 도착확인시 소포물 포장 및 <u>세관 직원 봉인상태 이상유무</u>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을 <u>경우</u> 국제우체국 소포창구(소포창구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건물내에 있는 비통관우체국 <u>우편창구</u>)까지 호송하여 국제우편물 담당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3. (생 략) ⑫ ~ ⑭ (생 략)	2. 국제우체국에 근무하는 세관공무원은 도착확인시 소포물 포장 및 <u>세관 봉인상태의 이상 유무</u>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을 <u>경우에</u> 국제우체국 소포창구(소포창구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건물내에 있는 비통관우체국 <u>우편창구</u>를 말한다)까지 호송하여 국제우편물 담당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3. (현행과 같음) ⑫ ~ ⑭ (현행과 같음)	○ 문구 수정
제18조(미인도 물품의 처리) ① ~ ② (생 략) ③ 운영인은 재반입된 미인도 물품에 대하여 지체없이 제14조제10항제2호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거 구매자의 해외주소를 확인하고 해당 물품을 즉시 <u>우편</u>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18조(미인도 물품의 처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운영인은 재반입된 미인도 물품에 대하여 지체없이 제14조제10항제2호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거 구매자의 해외주소를 확인하고 해당 물품을 즉시 <u>우편 등</u>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미인도 물품의 송부 방법 확대
제19조(반품, 분실물 등의 처리) ① 운영인이 구매자로부터 국제우편 또는 항공·해상화물로 판매물품의 교환·환	제19조(반품, 분실물 등의 처리) ① 운영인이 구매자로부터 국제우편 또는 항공·해상화물로 판매물품의 교환·환	

현행	개정안	비고
불요청을 받은 때에는 국제우편 또는 항공·해상화물로 교환·환불하여 줄 수 있으며, 구매자가 구입물품을 직접 휴대 입국하여 교환·환불을 요청한 경우에는 <u>입국시에 반드시 세관에</u> 휴대품 신고 및 유치(교환·환불하려는 물품가격 총액이 여행자휴대품 면세범위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 후 출국장면세점에서 교환·환불을 하거나 시내면세점으로 보세운송 후 시내면세점에서 교환·환불을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교환된 물품은 제12조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2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구매자가 출국하는 때 인도장에서 인도되어야 한다. <신설>	불요청을 받은 때에는 국제우편 또는 항공·해상화물로 교환·환불하여 줄 수 있으며, 구매자가 구입물품을 직접 휴대 입국하여 교환·환불을 요청한 경우에는 <u>입국시에 세관에</u> 휴대품 신고 및 유치(교환·환불하려는 물품가격 총액이 여행자휴대품 면세범위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 후 출국장면세점에서 교환·환불을 하거나 시내면세점으로 보세운송 후 시내면세점에서 교환·환불을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교환된 물품은 제12조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2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구매자가 출국하는 때 인도장에서 인도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매자가 구매한 물품을 법 제96조제2항에 따라 <u>자진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여 교환 또는 환불을 할 수 있다.</u>	○ 관세법 제106조의2 개정에 따른 면세점 구매물품 국내 환불절차 마련 ○ 관세법 제106조의2 개정에 따른 면세점 구매물품 국내 환불절차 마련

현행	개정안	비 고
② ~ ④ (생략)	③ ~ ⑤ (현행 ② ~ ④과 같음)	
제27조(보세판매장 협의단체) ① 제2조 제10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보세판매장은 설치·운영을 할 수 없다.	제27조(보세판매장 협의단체) ① 제2조 제14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보세판매장은 설치·운영을 할 수 없다.	○ 오류 수정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9조(청문) ① ~ ② (생략) ③ (생략) 1.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u>종합 인증 우수업체</u> 로 선정된 경우 2. ~ 3. (생략)	제29조(청문)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u>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u> 로 선정된 경우 2. ~ 3. (현행과 같음)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사항 반영
제30조(서류의 보관) 운영인은 물품반입 검사신청필증(구비서류 포함), 보세운송신고필증 및 교환권 등 판매물품 반출입과 판매에 관한 자료를 <u>시행령</u>	제30조(서류의 보관) 운영인은 물품반입 검사신청필증(구비서류 포함), 보세운송신고필증 및 교환권 등 판매물품 반출입과 판매에 관한 자료를 <u>영</u> 제3	○ 시행령 약어 수정

현행	개정안	비고
제3조에 정한 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u>시행령</u> 에 규정되지 않은 자료는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조에 정한 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u>령</u> 에 규정되지 않은 자료는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u>부칙<고시 제2020- 호, 2020. 7. .></u>	
<신 설>	<u>제1조(시행일)</u> 이 고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0호 서식 앞면)

발급번호		발급일자		
교 환 권				
구매자 성명 (서명)		생년월일		
국적 및 여권번호		출국/입국예정일시		
전화번호		선(기)편명		
코드번호	품명 및 규격	단가(\$)	수량	금액(\$)
○ ○ 보 세 판 매 장 인 (전화번호 ○○○ - ○○○○)				

190mm×140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이면 기재사항)

(별지 제10호 서식 뒷면)

현 품 인 수 도 사 항			
인 수 도 일 시	구매자 인수서명	인도취급자	세 관 확 인
1. 본권은 출국/입국 시 ○○공항 출국장/입국장 보세구역 내에 있는 보세판매장의 인도장에서 현품과 교환한다. 2. 출국수속 시 본권을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고 확인을 받아 주십시오. 3. 본권은 재발급이 되지 않으므로 분실 또는 훼손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4. 구매물품은 양도가 되지 않으므로 본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안 됩니다. ※ 만약 본권에 대하여는 의문사항이 있을 때는 폐사 매장으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 기재사항은 보세판매장 실정에 맞게 문구를 정정 가감 사용할 수 있다.

(별지 제16호 서식)

보세판매장 판매물품 인도자 지정 신청(승인)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 업체명		② 대표자	
	③ 주 소			
	④ 법인등록 번호	(전화번호)		
신청 내 역	⑤ 명 칭		⑥ 위치	☐ 출국장 ☐ 압국장
	⑦ 소재지			
	⑧ 건물의 구조· 동수 및 면적			
	⑨ 시설주			
	⑩ 지정기간			
위와 같이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3조제2항에 따라 면세물품 인도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세관장 귀하				
첨부서류 : 1. 인도장 운영계획서 1 부. 2. 채용 보세사 자격증 사본 각 1 부. 3. 그 밖에 인도자 지정 및 인도장 관리에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